

# 建築法施行規則中改正

建設部令 第56號

1968年 6月 14日 公布

建築法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1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建築法施行令(이하 “令”이라 한다)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別紙 第1號書式 建築許可申請書의 正本 및 副本에 다음 圖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다만, 建築法(이하 “法”이라 한다) 第5條 第1號 및 第4號의 建築物에 있어서는 (다) 欄에 揭記하는 圖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
第8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
第8條(駐車場設置를 필요로 하는 建築物) 令 第111條 2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의 設置를 필요로 하는 建築物이라 함은 學校·事務所·銀行·病院·劇場(映畫館·演藝場·集會場을 포함한다)·觀覽場·百貨店·舞踏場, 公衆의 用에 用하는 浴場, 市場·旅館·共同住宅·工場·倉庫·貯藏庫·火葬場·屠殺場을 말한다.

別紙第1號書式 및 別紙 第9號書式을 각각 別紙와 같이 한다.

## 附 則

이 令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.

圖書의 種類		表示하여야 할 事項
가	附近案內圖	方位·道路 및 目標가 되는 地物
	配置圖	縮尺·方位·垈地의 境界線, 垈地내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位置, 申請에 관계되는 建築物과 다른 建築物과의 區別, 推壁·우물 및 汚物淨化槽의 位置, 垈地가 接하는 道路의 位置 및 幅員
	各層平面圖	縮尺·方位·간찰잡기 各室의 用途, 壁 및 가새의 位置 및 種類, 통채기동 開口部와 防火門의 位置 및 延燒의 虞慮가 있는 部分의 外壁構造
나	污物淨化槽의 構造圖	污物淨化槽의 모양 構造 및 크기
	二面以上의 立面圖	縮尺·開口部의 位置 및 延燒의 虞慮가 있는 部分의 外壁과 처마 안의 構造
다	二面이상의 斷面圖(法第5條 第4號는 제외)	縮尺 바닥의 높이, 各層 천정의 높이, 처마 및 채양의 기장, 처마 높이와 建築物의 높이
다	基礎伏圖 各層바닥 伏圖 붕지틀 伏圖 構造詳細圖	縮尺 및 構造耐力上 主要한 部分의 材料 種別 및 치수
	構造計算書	建築物의 概要, 構造計劃, 應力算定 및 斷面算定

